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68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박정하 · 조은희 · 안철수  
이소희 · 김은혜 · 서천호  
엄태영 · 정성국 · 서범수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있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을 “사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u>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u>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u>사업 및</u></p> <p><u>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p> <p>----.</p>